

2023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

2023. 03. 28.(화)



캠퍼스기획안전과

2023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

☐ 심의안건

의안 번호	의안명	페이지
1	인천대학교 안전보건관리 규정 심의(안)	3

☐ 보고자료

보고 자료	내용	페이지
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 종합계획	5

1. 의결주문

- 「인천대학교 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라 안전보건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의무가 적용('20.1월)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 *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실무 및 급식실 관련 근로자
- 우리대학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의 기본방침 및 절차를 규정

3. 주요내용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1조~3조)
-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세부사항(제4조~8조)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제9~12조)
- 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제13~17조)
- 마.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제18~23조)
- 바. 사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제24~30조)
- 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제31~33조)

4. 심의 (안)

○ 심의 내용 「인천대학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1】

1. 추진경과

- 총장방침 : '23. 02. 15.(수)
- 전부서 의견조회 : '23. 02. 17.(금) ~ 02. 24.(금)
- 사전심사 의뢰 : '23. 02. 27.(월)
- 사전심사 회신 : '23. 03. 16.(목)

2. 규정 제정안: <붙임 1> 참조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2. 수립목적

- 인천대학교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

3. 안전보건 현황

- 현업근로자 현황

구분	총계	행정	운전직	시설관리	미화	조경/목공	경비
인원(명)	148	20	6	17	74	30	1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2년도 넘어짐으로 인하여 산업재해 ⇒ 1건 발생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총계	'20년	'21년	'22년
건수	4	2	1	1

-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고용노동부)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발표
 -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개선대책(재발방지)의 적정성, 노사 참여 여부, 현장 적용 등 위주로 확인
 -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사업장 점검 및 교육 실시
 - 재해 빈도가 높은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등 집중교육

4. 23년도 안전보건 추진 계획

구 분	사업내용	목적	추진시기
법적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우리 대학 현업근로자의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기본 방침 및 절차를 규정	4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조성	3, 6, 9, 12월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 현업근로자 정기교육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보건 의식 고취	- 관리감독자 : 8~10월 - 보건관리자 : 채용시 - 현업근로자 : 매월
	보건관리 위탁	보건전문기관 보건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2월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평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4월, 10월
	안전검사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하여 재해 예방	5월
	법령 요지 게시 및 안전홍보물 제작	산업안전보건법 법적준수 사항 안내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7~10월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	8~11월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노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여 건강장해 예방	10월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순회점검 - 합동안전점검	도급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 협의체 : 매월 - 순회점검 : 일주일에 1회 - 합동안전점검 : 3, 6, 9, 12월
비법적 사항	안전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	추락위험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	5월
	안전용품 구매 및 안전보건표지 제작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구매 및 지급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 주의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11월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ISO45001 취득('23년 2월)에 따른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심사 실시	12월

5. 협조사항

-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을 위한 근로자 참여
- 23년도 무사고를 위한 안전작업 실시

<붙임 1>

규정 제 호

인천대학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규정(안)

인천대학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대학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총장을 말한다.
2. “관리감독자”란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4. “보건관리자”란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5. “산업보건의”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의사를 말한다.
6. “근로자”란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본교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의 사용하는 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의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본교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본교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사항 건의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4.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본교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본교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사항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산업보건의) ①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본교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본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 ② 사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사임이 있을 경우에는 사임일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공문서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대상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상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구분하며, 근로자 대상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법에서 정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강사 및 교육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안전·보건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정기

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와 같다.

제16조(직무교육) ① 본교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7조(교육결과 기록·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안전관리

제18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정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조치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의한 보고가 있을 때는 즉시 작업중지 및 수리,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9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검사 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등에 부착한다.

③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표지를 부착하고, 보수 후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20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교의 유해·위험한 시

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가스,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 분석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최초, 수시,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3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3년 이상 보존하고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 5 장 보건관리

제24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강진단은 「시행규칙 제201조」에 의해 유해인자별 기준에 따르며, 수시·임시건강진단은 필요시에 실시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누락 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⑥ 본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발암성의 경우 30년) 한다.

제25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제27조(보건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본교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기기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28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29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정리정돈, 조도, 환기, 온도, 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1조(비상연락망) 관리감독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32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최초 목격자나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신속히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

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조사는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서류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보존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5년간

가. 작업환경측정결과(일반)

나. 건강진단결과(일반)

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 3년간

가. 산업재해 발생기록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결과서 외 행정서류 포함)

라.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서 외 행정서류 포함)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

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② 전산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교육시간 및 내용(제15조 관련)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채용시) 2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물질안전 보건자료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는 방법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연간 1시간 이상

【별지 1】 보호구 지급대장

보호구 지급 대장

NO	품명	수량	지급일자	부서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2】 개선요구서

개 선 요 구 서			
작 성 부 서		발 행 일 자	
작 성 자		수 신 처	
사 고 발 생 개 요			
개 선 요 구 사 항	불안정한 행동 ☐ 불안정한 상태 ☐ ◦ <u>개선 요구사항</u> :		
개 선 내 용	◦ <u>원인, 대책 및 개선조치 내용</u> :		